

전기용품 안전관리 최근 정보

1. 개정 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코자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규격(IEC) 및 한국산업규격(KS C IEC)과 부합화한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강제적용 안전기준 개정 [별표 1] : 59개 기준
- 참고적용안전기준 개정 [별표2] : 118개기준
- 전자파 적용안전기준 개정 [별표 3] : 4개기준

3. 자료 입수 방법

- 전기용품안전기준에 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를 방문하여 인정인증-공산품안전인증-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에 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개정 안전기준은 현재 홈페이지 내용 수정중이므로 금번 개정된 안전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제품안전과(02-507-7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 - 52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5. 24.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안전기준) 안전기준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6월 18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검사기준중 개정기준

3.1.2(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카 내부치수 및 도어치수는 KS B ISO 4190-1 부속서에 따른다. 다만 카 내부치수는 KS B ISO 4190-1 부속서 또는 용도 및 적재하중을 고려한 최적 카 내부치수와 면적대비시 5% 이내의 증가는 허용할 수 있다.

3.1.3(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로의 치수는 KS B ISO 4190-1 부속서에서 규정한 치수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3.1.5(9)①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도 등 통로의 도중에 거실이 있거나 창고와 같이 화물을 쌓아 놓아서는 아니되며, 유지관리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 출입구의 폭과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1.5(9)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단은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난간 및 경사가 있어야 하며, 계단의 폭은 0.7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다리(원형사다리 포함)는 계단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기계실 바닥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계실 바닥의 높이차가 4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9)③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입문은 보수관리 및 방재를 고려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금속제 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효 개구부의 폭 0.7m 이상, 유효 개구부의 높이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이 외기에 접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부식이 없어야 한다.

3.1.6(16)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장치는 정상 운행하는 동안 속도제어, 감속, 정지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①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브레이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드럼 또는 디스크 상에 제동작용을 하는데 기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 (솔레노이드 플런저는 포함하고 솔레노이드 코일은 제외한다)들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정상운전에서 브레이크의 개방은 지속적인 전류의 공급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 전류의 차단은 적어도 2개의 독립된 전기적장치에 의해 유효하여야 한다.

다. 브레이크는 코일에 전류가 차단되면 지연없이 구속되어야 한다. 다만, 브레이크 코일의 단말(단자)에 직접 접속된 다이오드 또는 커패시터는 지연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1.6(16)④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장치는 카, 균형추, 현수 또는 균형로프시스템, 권상기 도르래(도르래에 직접적으로 또는 그 도르래의 바로 인접한 동일 축에) 중 한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속도제어를 함으로써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한다.

3.1.6(1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동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이장치는 카가 승강장에서 1,200mm를 이동하기 전에 통제불능한 이동을 감지하여 카를 완전히 정지시켜야 하며, 3.1.6.(16) ③.④.⑤.⑥.⑦.⑧항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장치가 승강기 설계구조상 완성검사시 현장확인이 불가한 경우 설계서나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법·령·코너

적용한 경우 2차 소방안전시에는 이 장치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3.1.8항 및 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적재하중은 표 2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50kg 단위(바닥면적 1㎡ 이하인 덤웨이터의 경우는 10kg 단위)로 표시하고, 최대정원은 1인당 하중을 65kg으로 계산한 정원으로 한다.

구 분		적 재 하 중
승객용(침대용제외) 엘리베이터의 카	바닥면적이 1.5㎡ 이하의 것	바닥면적 1㎡ 당 370kg으로 계산한 수치
	바닥면적이 1.5㎡를 초과하고 3㎡ 이하인 것	바닥면적중 1.5㎡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1㎡ 당 500kg으로 계산한 값에 550kg을 더한 수치
	바닥면적이 3㎡를 초과하는 것	바닥면적중 3㎡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1㎡ 당 600kg으로 계산한 값에 1,300kg을 더한 수치
화물용(침대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카		바닥면적 1㎡당 250kg(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바닥면적이 1㎡ 이하인 덤웨이터의 경우에는 150kg)으로 계산한 수치

3.2항의 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3.1.1(3), 3.1.2, 3.1.3(7)㉠ 및 (11) 제외), 3.1.5 ((1)~(3) 및 (5) 제외), 3.1.6((5)~(9), (11), (15)~(17) 제외), 3.1.7, 3.1.8 및 3.1.10에 따르는 것 외에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4.1.1(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카가 상승방향으로 과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착상구간에 정지한 경우 제어시스템 또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하여 승강장 문이 열린 채 제어할 수 없는 동작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상태는 견고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하며, 카가 승강장에서 1.200mm를 이동하기 전에 통제 불능한 이동을 감지하여 카를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 경우 2차 소방안전시에는 이 장치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승강기검사기준 3.1.6(16), 3.1.6(17), 3.1.6(18), 4.1.1(3)㉔, 4.1.1(3)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2000년 10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②노후·수리불능 등으로 교체하는 승강기 및 기존건축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기는 승강기검사기준 3.1.6(16), 3.1.6(17), 3.1.6(18), 4.1.1(3)㉔, 4.1.1(3)㉕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후에 체결하는 교체 및 설치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한다.